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99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 한정애·송옥주·김태년

문진석 · 임오경 · 이학영

박홍근 · 김영배 · 정일영

박희승 • 추미애 • 이건태

박수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가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할 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범죄이용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32조의4제5항 신설 및 제104조제2항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① 제30조를 위반한 자가 자진 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 및 수사 에 협조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예방 및 방지와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진신고의 접수·처리·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진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자진신고 시스템 구축·운영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 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한 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

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 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 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제32조의5제3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6호 중 "제32조의4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① 제30조를 위반한 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조사 및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예방 및 방지와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자진신고의 접수・처리・조치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진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자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 정이용 방지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진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 <u>본법」 제15조에</u> 따른 한국정 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 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 탁할 수 있다.

- 정이용 방지 등) ① ~ ④ (현 행과 같음)
 - ⑤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 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 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 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 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 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①·② (생 략)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 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 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4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략)
- 6. 제92조제1항제1호(<u>제32조의4</u> <u>제2항</u>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 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 ③ ~ ⑥ (생 략)

있다는 사실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정보통
 신진흥협회에
제10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u>유</u>)
2
1. ~ 5. (현행과 같음)
6 <u>제32조의4</u>
제2항 또는 제5항
③ ~ ⑥ (현행과 같음)